



I 계약의 의의와 특징



가 계약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자사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나 계약의 원칙

- 1)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체결하며, 신의와 성실의원칙에 따라 이행
- 2)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됨
- 3)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로 민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됨**

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특성

- 1) 공공복리추구 목적달성을 위해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 2) 예산집행의 공익성·공정성·경제성 확보를 위해 계약관계법령 준수하여 처리

라

계약의 법령체계

지방계약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우선적용 대상임을 알아야 함.

마

지방계약법령의 적용대상 기관

- 1) 직접 적용대상 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특별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 위임 위탁한 기관법인)
 - 교육행정기관(시·도 및 시·군·구의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 2) 준용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 지방공사 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 설립한 법인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예:사회복지법인)



계약체결 금지



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들이 종사하는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체결 금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계열회사 등은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계약체결 금지대상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본인 : 본인이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입찰을 불문하고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배우자 : 배우자가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금지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직계 존·비속은 본인이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금지
- ① 본인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 ② 소유자의 명의와 관계없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 사실상 본인 소유재산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③ 자본금 합산금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 계열회사 - 본인이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수의

계약 금지

III

자치단체 계약의 종류



구 분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 낙찰자	최저가·적격심사·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보증금(서)	대가를 일시에 선납 받는 경우 필요	필요
대가지급	선납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계약이행 후 지급·선금지급
예정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작성·일반재산인 경우 2인 이상 감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작성·생략가능(공사:2억(일반), 1억(전문)전기공사 등 8천, 5천미만 (물품·용역, 협상, 일괄입찰) ※ 소액수의 전자견적 계약인 경우 작성
하자보증금	불필요	필요
지연배상금	부과	부과

IV

지출(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가 계약목적물별 분류

공사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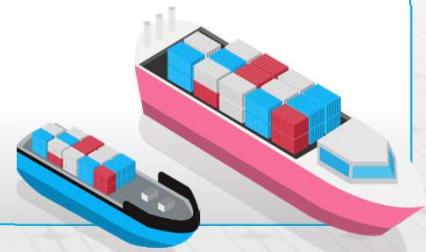
일반(토목, 건축, 토건, 산업환경설비, 조경), 전문(25종),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제, 환경관련 공사 등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당해 사업자 면허가 없으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물품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

- 기술용역(설계, 감리)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준하는 용역
- 일반용역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의 용어 정의에서 정하는 용역
- 학술연구용역 : 정책의 개발 및 연구, 수용 공급의 예측
- 시설분야 용역 : 청소 위생관리, 시설물 경비·관리
- 생활, 건설 폐기물 용역
- 육상·해상 운송 용역



나

계약체결형태별 분류



확정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계약체결

총액계약

해당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

단가계약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단가계약체결

※대상공사 : 신호등 수리, 차선도색, 관로복구, 도로·하천보수·복구 등

장기계속, 계속비, 단년도계약

구 분	장기계속 계약	계속비 계약	단년도 계약
사업내용 확정	확 정	확 정	확 정
총 예산 확보	미확보 (해당 연도분만 확보)	확 보 (5년)	확 보 (1년)
계약체결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계약체결 및 이행 (총 공사금액은 부기)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계약 (연부액으로 부기)	해당 연도 예산범위 내 입찰·계약

단독계약

계약 상대자를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



공동계약

2인 이상의 수급인과의 계약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구성방식	출자비율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계약자 종합조정, 관리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으로 구성
대표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이행 및 하자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small>(1차:구성원, 2차:보증기관)</small>	구성원 각자 책임 <small>(1차:구성원, 2차:보증기관)</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원 각자 책임 <small>(1차:구성원, 2차:보증기관)</small>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구성원 연대책임
하도급	구성원 전원동의 시 하도급 가능	각자 책임하에 일부 하도급 가능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실적인정	금액·출자비율로 산정 규모·실제 시공부분	구성원별 분담시공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계약자 전체실적 부계약자·분담시공 부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 공사계약 경우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하는 공사로 1인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
- 해당지역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의무 공동 도급 대상이 될 수 없음
- 입찰공고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이상이 되도록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함
- 수의계약도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공동계약 가능
- 물품·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할 수 없음

통합계약

부서 또는 사업소내의 유사사업을 통합 발주 계약

예)여성회관, 민방위회관, 농민회관 건립을 통합하여 다목적 회관으로 건

설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사업의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체결

예)차량용난방,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청사경비 등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입찰

유사한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계약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입찰 :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서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먼저 규격(기술)낙찰 실시 후 가격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한자 낙찰자 결정

◆규격·가격 동시입찰 :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서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기술) 입찰가격을 동시에 실시 후 규격(기술)입찰서 개봉 후 가격개봉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한자 낙찰자 결정

※규격·가격 동시 입찰은 규격(기술) 적격자가 1인 뿐이라도 낙찰자 결정이 가능하나 규격·가격 분리입찰은 불가능 함



협상에 의한 계약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이 있는 경우

※협상절차

- ① 협상기준 및 작성·열람·입찰공고(공고 시 협상계약이라고 명사) ⇒ ② 참가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 교부 ⇒ ③ 제안서제출 ⇒ ④ 심사위원회명단작성(정수의 3배) ⇒ ⑤ 입찰참가자가 심사위원추천 ⇒ ⑥ 심사위원확정(불참자예상 115%확정) ⇒ ⑦ 우선 협상대상자(적격자)선정 ⇒ ⑧ 협상기준 및 가격작성 ⇒ ⑨ 가격 및 조건협상 ⇒ ⑩ 낙찰자결정 계약(협상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10일 이내로 계약 체결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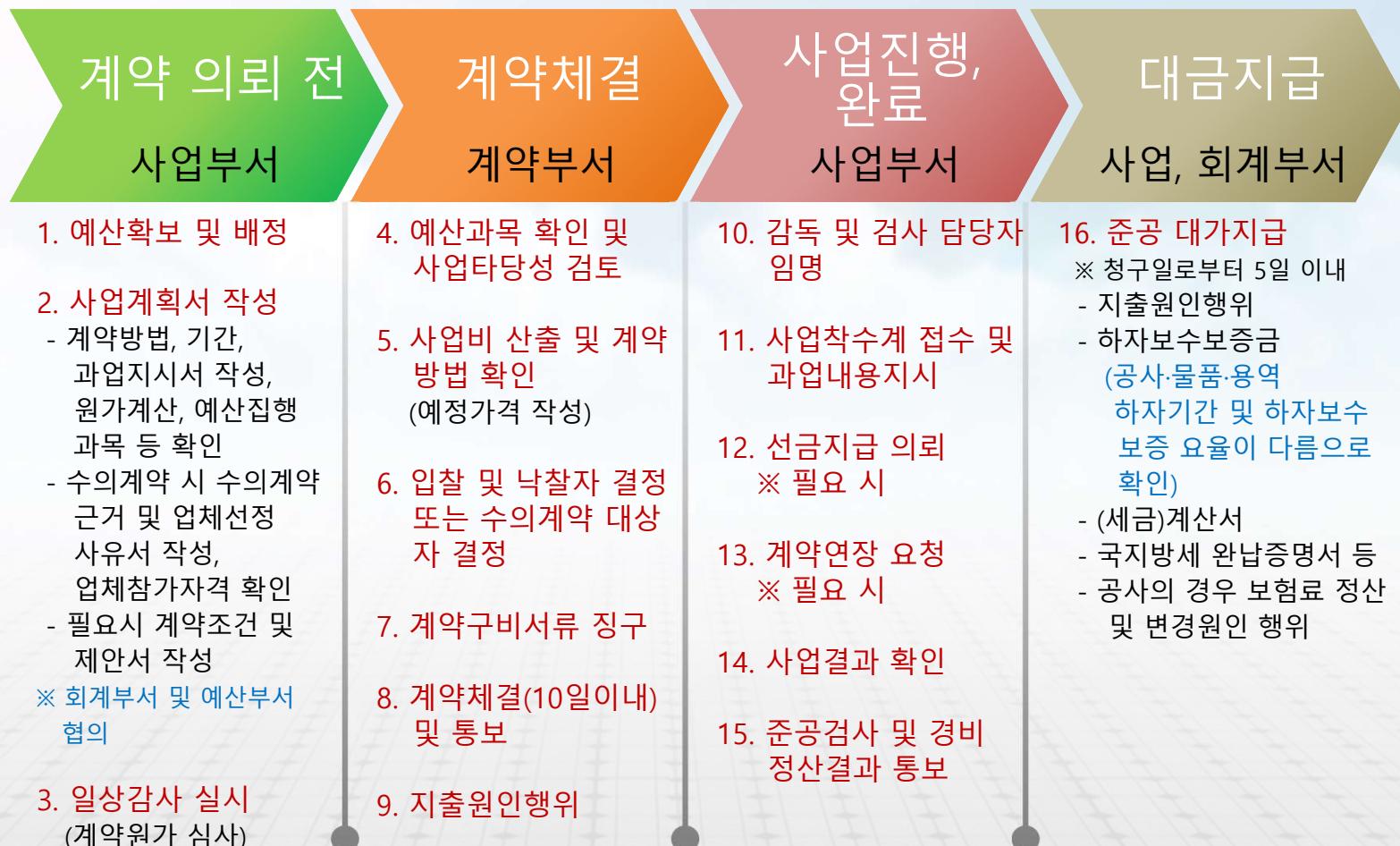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평가분야 (계량화)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평가 ※각 평가 항목의 배점 한도는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정성적 평가 분야	용역 . 물품	60	■ 평가위원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참조



V 입찰 및 계약의 절차

1 업무 흐름도



2 입찰절차의 세부내용

가. 예산집행품의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집행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님)

예산집행품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집행내용이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 ② 집행 예정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인지 여부
 - ③ 예산은 배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④ 집행 예정금액은 법령 또는 기준내의 단가에 의한 산출인지 여부
- 등



나. 계약방법 결정

- 계약목적물의 분류 : 공사, 물품(제조·구매·수리·가공), 용역
- 계약체결방법 분류 : 경쟁(수의), 공동(단독), 총액(단가), 장기(계속, 계속비, 단년도)
- 낙찰자 결정방법 분류 : 최저가, 적격심사, 협상계약 등

다. 입찰공고

1) 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계약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입찰참가자들에게

입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통지행위로서 매우 중요함.

2) 입찰공고일 기준

- 현장설명공사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PQ심사 입찰은 30일전)

※ 추정가격 10억 미만(7일전), 10억~50억(15일), 50억 이상(30일)

- 현장설명이 없는 공사

※ 추정가격 10억 미만(7일전), 10억~50억(15일), 50억 이상(30일), 고시금액(40일)

- 협상계약, 2단계 입찰(규격, 기술입찰)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간

※ 추정가격 1억(10일), 1억~10억미만(20일), 10억 이상(40일)

☞ **긴급 및 재공고 입찰인 경우 : 제안서 제출마감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3) 입찰공고 방법 (반드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정정보장치 이용/지자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병행)

- 세출의 원인이 되는 경우 : 나라장터(g2b), 교육기관(s2b), 단체급식(eat.co)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 전자자산처분(onbid)

라. 입찰참가자격

- 1)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를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한자

※경미한 공사의 입찰(시공)참가자격 : 일반 5천, 전문 1천 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시공 가능

- 2) 보안측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적합판정자

- 3)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한자

- 4) 입찰참가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

- 5)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

※전자입찰인 경우 전자입찰 system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각서만 징구하고 납부면제 처리



마. 입찰의 개념

- 1) 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임.

- 2)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봉투만을 제출하여야 함.

※ 대부분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G2B를 이용한 전자입찰 실시함

바.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

1) 재입찰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 참가 가능
-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2) 재공고 입찰

-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재공고 입찰 시 최초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어도 추가 참가 가능
-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는 종전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며, 기한을 제외하고는 예정가격, 참가자격, 기타 입찰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3) 새로운 입찰

- 입찰이나 재공고 입찰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재공고 입찰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조건변경이 가능

VI

경쟁형태별 계약방법



가

일반경쟁계약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시켜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 제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그 낙찰자와 계약 체결하는 방법

나

제한경쟁계약

일정한 지역,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계약실적, 기술능력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체결하는 방법 (**일반경쟁과 지명경쟁의 단점을 보완하는 계약**)

제한의 기본원칙

각 항목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 기본원칙임

다

제한의 기본원칙

- 1)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범위를 정함
- 2) 각 항목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기본원칙임

- | | | |
|------------------|----------------|------------------|
| ① 특수한 기술·공법 동일실적 | ② 특수한 기술의 보유상황 |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
| ④ 지역제한 | ⑤ 설비제한 |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
| ⑦ 물품의 납품능력 | ⑧ 중소기업자 | |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경쟁 입찰은 ④의 지역제한과 ① 실적제한 ④의 지역제한과 ② 특수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⑧ 중소기업자와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지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② 지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지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② 지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 (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물품납품능력, 중소기업자, 설비)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어야 함.

마

지명경쟁 계약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등을 경쟁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체결 하는 방법.

※ 절차가 간소하고 능력있는자 만을 참여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특정인의 정실지명이나 담합이 용이하여 경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지명경쟁계약 사업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
-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공사
-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

※ 지명경쟁 입찰에서 그 대상 사업자가 10인 이내이어야 지명경쟁 입찰을 볼일 수 있음

바

수의계약

1)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 계속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 중소기업 보호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운용됨.

※ 장점 :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 선정, 우수한 업체 선정 가능,
입찰절차 간소화

단점 : 계약담당자 자의성 개입우려, 특정업체 선정에 따른 특혜시비, 예산절감기대 우려

2) 수의계약 상대자의 자격 및 제한

- 수의계약 상대자의 자격 요건은 경쟁입찰 참가자의 요건과 동일함

※ 단, 단체수의계약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만 있어도 계약 가능

- 부정당업자 또는 영업중지중인 자, 부도 파산상태에 있는 자와 계약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

3)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구 分	유 형	주 요 내 용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통신· 소방·기타 공사	용역· 물품· 기타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함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추정가격 8천만 이하	추정가격 5천만 이하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 이하(단,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 체결의 경우 5천만 이하)				
	하자구분 곤란 등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 수의계약(시행령 제25제1항4호가, 나, 다, 마)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천재 지변 등	①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행령 제25제1항 1호~3호, 4호의 라·바~하, 6호~8호) ②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시행령 제27조) ③ 재공고 입찰결과 입찰이 불 성립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시행령 제27조) ④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았으나 제출자가 1인인 경우로 다시 견적서를 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경우(시행령 제30조) ⑤ 대안 입찰 또는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되었거나 재공고 입찰결과 1인뿐인 경우(시행령 제95조 제1항 및 제4호)				

4) 수의계약 요령

- 가) 지정정보장치를 통하여 3~5일간의 안내공고를 통하여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함(품질확인 및 예산절감 필요성은 제외)
- 나) 공사 안내공고의 경우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 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 또는 지정정보장치에 게재 하여야 함
(2천만원 이하, 공사의 특성상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다) 수의견적 안내공고 시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①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는 제한할 수 없음)*
 - ②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로 제한
(공사로 한정)
 - ③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일부 인접 시·군만 가능)
 - ④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 또는 일부 가능)
- 라)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자 가능
(지점 지사 포함 가능)

마)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견적서 제출대상 을 제한하는 경우

- ①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 ② 규격
- ③ 재질 또는 품질
- ④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보유상황
- ⑤ 장비·시설의 보유상황
- ⑥ 시공 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건수](#) 또는 [이행중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 ⑦ 제조공장 또는 처리장
- ⑧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다" · "라 " 의 각 호는 "마 " 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 가능

사) 낙찰률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용역인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인 경우는 90%) 제출한 자 중최저가격을 제출한자

- 아) 국내외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가능) 경우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배제사유로 제한 가능
- 자)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운영요령 별 표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차)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으로 판명되어 계약결정이 취소 또는 제외 되는경우, 차순위자가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 가능
- 카) 계약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순으로 배제사유 가 없고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견적률을 적용 계약체결 가능
- 사) 낙찰률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용역인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인 경우는 90%) 제출한 자 중최저가격을 제출한자

5) 1인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

가) 금액기준에 의한 경우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종합·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기타공사, 물품·용역·기타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 수의계약 요령 :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금액 결정, 배제사유자와 계약체결 배제

나)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구 분	구체적 범위	수의계약 제외 대상
1) 하자책임 구분 곤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금차공사가 시공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 보수공사로 수직적 기초공사 》 전차시공물의 일부해체 또는 변경 접합시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축제·호안, 도로포장·개설, 상·하수도접합, 조경, 토공, 준설과 유사한 토목공사 》 동일구조물 이외에서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일부탈퇴 후 다른 구성원으로 전체 공종의 50% 이상 시공한 경우 <p style="color: red;">※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p>
2) 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의 잔여공사 기간 비율이 40% 미만 공사
3) 마감공사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무리 공사로 2종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 금차공사 금액이 2억미만이고 마감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금액의 $\frac{1}{2}$ 미만인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공사금액이 금차공사 대비 $\frac{1}{2}$ 이상 경우 》 2종이상 전문복합공사 2억 이상인 경우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일부탈퇴 후 다른 구성원으로 전체 공종의 50% 이상 시공한 경우 <p style="color: red;">※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p>
4) 특허공법 등 신기술 등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공법,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자연 재해대책법 제61조(보호 또는 유효기간 내 한정)의 경우로 입찰이 실질적으로 	
<p style="color: red;">※ 특허·신기술이 왕자업체(추정가격 대비 특허적용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 계약 할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전에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 계약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p>		

다)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

- 수의계약 운영요령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대상 참조

6)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가)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로 직접 견적서(2인 이상) 제출하여야 함

나)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 수련회 활동은 제외)
-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호환되지 않아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여론조사용역
- 구촉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물품 중 협동조합을 통해 2인 이상 추천
- 지정정보처리 장치의 오류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설비 등을 필요로 하는 용역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기업

다) 2인 견적(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 (대·중기업 배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나라장터로 견적서 받았으나 제출자가 1인인 경우로서 다시 받아도 1인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용어정의

- 낙찰하한율 : 적격심사에서 수행능력에서 만점을 획득한 경우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 다수공급자계약(MAS) :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 제3자단가계약 :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미리 단가만 정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해당 물품을 납품요구 및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제도

VII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제입찰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방법, PQ심사, 적격심사, 수의계약 기준을 삼기 위한 금액(부가세제외)

추정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

구 분	입찰방법 등 구분	관 련 규 정
1. 국제입찰 대상	·광역 - 공사 : 240억 이상, 물품·용역 : 3.2억 이상 기초단체(51군구), 지방공기업 : 6.4억원	국제입찰대상 공사, 물품, 용역 범위 ※ 행자부 고시(16. 12. 30관보)
2. 공사의 현장설명	·300억 원 이상 의무(입찰일전이 기준 33일전 실시 해야 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4, 5항
3. 내역입찰, 총액입찰	·10억 원이상 공사는 내역입찰 실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4. 수의계약 대상	·공사 2억(전문 1억, 전기 등 공사 8천만 원) 물품·용역 : 5천만원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5. 낙찰자 결정방법	·최저가 낙찰 : 2.1억미만 물품구매(중기지정제품 제외) ·적격심사 : 공사(300억미만), 용역(모든 경쟁입찰 물품제조구매(2.1억이상), 물품제조 (2.1억미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2

예정가격

- ▶ **의의**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 ▶ **방법** :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이행 난이도, 계약조건 등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 등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
- ▶ **절차** : ①추정가격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작성 → ④(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 ▶ **세액**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포함
- ▶ **비치** : 입찰 또는 개산계약·수의계약 등에 부칠 경우 미리 작성하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누설되지 않도록 비치
- ▶ **작성예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와 수의계약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추정가격 2억, 5천만원 물품제조구매, 용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협상계약), 제81조·제82조(개산계약), 제95조 제1항제5호(일괄입찰)
 -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가격차가 심한 경우, 특정제작, 국제시세, 긴급구매 등)

▶ 예정가격 변경의 경우 : 지계법 시행령 제26(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입찰로 실시하여야 함))

 계약해지 :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소멸함

 계약해제 : 규제나 금지 따위를 풀어서 자유롭게 함

3 적격심사와 예정가격 결정절차

기초금액 작성

계약담당자 또는 설계자는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작성함.

기초금액 확정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 조정한 부가 가

기초금액 공개

치세 등을 합산하여 확정함.
작성된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전까지 G2B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4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복수예비가격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작성함(+ 범위 7개, - 범위 8개)

예정가격 결정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가격으로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 공개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가격 4개, 예정가격 공개

5 감정·견적·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감정가격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산술평균한 감정가격

견적가격

제3자로부터 직접 받은 가격(적정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 또는 시장표준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활용)

거래실례가격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조사기관(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공표한 가격,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가격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1 적격심사제도 의의

도입배경

최저가격낙찰제와 과열경쟁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원가의 보장으로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함(국가 '99.7월, 지방 '99. 9월 도입)

법적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행자부 예규(시설공사, 기술용역, 물품제조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심사개념

입찰가격 외에 시공경험(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등의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는 제도.

적용대상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공사(300억 원 이상은 종합평가 낙찰제, 일괄·대안입찰, 건설 기술공모 대상공사는 적격심사에서 제외)

2 낙찰자 결정

- ▶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로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
- ▶ 적격통과 점수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 92점, 미만인 공사 95점

3 적격심사 요령 및 절차

- ▶ 요 령 ① 입찰공고에 실적인정범위, 실적인정규모, 평가기준 규모, 평가대상 업종, 업종평가비율, 서류제출기한 명시 하여야 함
② 예장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서류제출 요구
(입찰가격 외에 만점을 받더라도 낙찰이 불가능한 업체 선순위 업체 탈락 통지)
③ 낙찰자 결정 결과는 지체없이 G2B 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
④ 부적격 통보에 이의가 있는 자나 선순위자가 심사 내용에 이의가 있는 후순위자는 3일 이내에 재 심사요구 5일이내 재심사 실시

▶ 절차 입찰공고(낙찰자결정방법, 심사기준, 제출서류 및 기한 등 명시) →
심사기준 등 열람(공고일부터 등록마감일까지) → 입찰집행(기초금액 개
찰

5일전 공개, 개찰후 적격대상자 선정) → 적격심사서류 제출(7일이내, 수
해복구 4일 이내/100억 ~50억 15일, 수해복구는 10일) → 적격심사 실시
(7일 이내, 수해복구 4일(2일연장) → 보완요구(7일 이내, 수해복구 3일 이
내 보완 추가서류 제출가능) → 적격심사결과 통보(G2B 또는 서면) → 재
심사 요청 → 낙찰자 결정 통보 → 계약체결(10일 이내)

4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입찰공고 시 유의사항

▶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제한 금지

※ 자격제한 시 민간실적,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1개 면허로 시공이 가능함에
도 2개 이상 면허로 제한하는 경우 등

▶ 자기모순이 되는 입찰공고 금지

※ 공고내용과 현장설명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공고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는 등을 유의

▶ 입찰 공고 시 법령, 규칙, 예규 등 준수

※ 법령, 규칙, 예규 등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공고에 명시하여 입찰집행 및 적격
심사에서 분쟁소지 사전 차단

▶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인정 범위 및 규모, 평가기준 규모 등을 명시

▶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 업종, 업종 평가비율 등을 명시



1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차수공사로 계약하고 총 낙찰금액은 계약서에 부기

2

계약문서

효력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상호 보완효과를 가지며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 문서

종류

품의서·계획서, 계약서(당사자간 상호날인, 간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설계서(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규격서(물품), 물량내역서(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의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용역·물품 등), 착공·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감독관, 검사·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검수조서 등, 입찰·계약·하자·선금보증서, 정부수입인지, 지역개발공채, 하도급계약서(직불합의서), 공동이행 계획서, 그 밖의 계약에 필요한 서류

계약보증금

- 금액 : 계약금액의 10% 이상(공사는 15% 이상 / 40%까지 제출 가능) ,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공사의 계약보증금 준용 가능, 최저가 입찰 또는 대형공사 입찰인 경우 반드시 계약이행 보증서 제출
- 납부수단 :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반환
- 납부면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50%이상 출연법인, 중소기업협동 조합과의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 5천만 원 이하의 계약 및 관습상 보증금 징수가 부적합 한 경우,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품을 구매한 경우로 공급자가 아니면 해당 물품 구입이 곤란한 경우
- 귀속사유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귀속절차 : 현금, 보증서
- 귀속예외 : 연대 보증인이 이행한 경우,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책임 시공 경우
- 보증금 반환 : 계약이행 완료되면 지체없이 반환(기성인 경우에 대하여는 미 반환)
※ 이자 지급 시에는 반드시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등을 반드시 징수

3

계약의 이행 및 대가 지급



가. 공사 착공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신고서
- 공사공정 예정표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착공 신고서(착공 전 현장 사진) 등

나. 용역착수

- 용역공정 예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등

다. 공사(용역)의 검사

- 준공신고서를 서면으로 통지를 받아야 함
- 계약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준공신고서 등 기타서류에 의하여 14일 이내 검사
※ 3일 연장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연장 가능
- 검사에서 계약이행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위반의 경우 시정조치
- 검사가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보

라. 기성의 검사

- 기성검사는 3회마다 2회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로 갈음.
- 자재(사급)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것은 제외하고 100분의50까지 인정

마. 선금지급

- 적용 : 공사, 물품 제조(구매 제외) 및 용역 계약

바. 지급 범위

선금의무지급률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 20억 원	10억 원 ~ 3억 원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 물품 및 용역계약에서 기술개발자금의 경우 70%까지 가능하나 10%추가지급

사. 지급 예외

-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체장 승인을 얻어 사유를 서면통지

아. 선급지급 시 유의사항

- 차수계약으로 이행된 연도의 기성금 공제
- 이월사업의 경우 해당연도 이행금액 기준으로 지급
- 채무부담행위 예산의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된 연도에만 지급
- 잔여 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이면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
※ 단, 국내외연수, 수학여행,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 조기집행, 물가변동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 곤란한 경우 [30일 이내라도 선금지급 가능](#)

-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경우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회계연도 내 지급](#)이 가능
- [회계연도 이후 미지급된 선금은 이월연도에 지급 가능](#)

자. 선금지급 채권 확보

- 채권확보는 증권 또는 보증서·지급각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선금 채권 보증기간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차. 선금사용방법

- 해당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사용
-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수령 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카. 선금지급 조건

-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및 배분,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선금지급 조건에 명시
-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 제출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신청자	대표자	좌동	좌동
신청 방법	신청서상에 출납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날인하여 구분 신청	신청서상에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별로 날인하여 구분신청	구성원별로 날인하여 구분신청
지급 계좌	구성원별 계좌	구성원별 계좌	대표자
채권 확보	출자비율에 분할납부 대표자 또는 구성원중 1인일괄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납부	구성원별로 분할납부
선금 반환	구성원 선금에 대해서만 반환	좌동	좌동

4 대가의 지급

- 가. 계약 이행완료 후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지급
- 나. 검사완료 후 대가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기한내에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급
- 다.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반송

5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 가.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 나. 국지방세 완납 납세증명서
- 다. 준공검사조서, 하자이행보증서
- 라.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어 있다는 입증서류
- 마.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바.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
(하도급자 통장사본, 대금수령 확인서 등)



6 하자보수 보증금

보증금 납부

- 1)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2/100 ~ 10/100 범위내에서 공종구분으로 납부
- 2) 수개의 공종이 혼합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 주된 공종으로 기준

납부시기 및 방법

- 1) 준공검사 후 대가지급 시 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납부(담보기간 동안 보관)
- 2) 납부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항 내용 준용

납부면제

- 1) 지방계약법 제21조 단서 규정의 경우
-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 3)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 책임기간

- 1)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날 중 먼저 도래한나로 부터 1~10년
이하 범위(행자부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책임기간 정함)
- 2) 각 공종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 주된 공종 기준
※ 개별법령에 하자담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기간 설정

보증금 귀속

- 1)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자치단체에 귀속
- 2)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징수관에게 통지 수입금으로 징수
- 3) 보증서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징수관, 유가증권취급(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보증 기관에 통지 수입금으로 징수

하자검사

- 1)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검사조서 작성
- 2) 3천만 원 이하 공사는 하자검사 조서작성 생략 가능

보수의 이행

- 1)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하자보수 착공신고서 제출
- 2) 하자보수 착공 시 설계서를 첨부하고 이행소요기간 명시
- 3)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공사 착공

7

계약의 이행 지체 및 해지·해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 사유

- 1)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 경과하고도 착수하지 않는 등
- 2) 물품구매계약 :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 납품을 거부 또는 완료하지 못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는 사유

- 1)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40/100이상 감소하는 경우
- 2) 공사정지 기간이 공기의 50/10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해지(解止)

계속적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행위

※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 발생

해제(解除)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원상으로 돌리는 행위

※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정에서 해제사유가 발생해야만 가능

해지와 해제의 차이점

구 분	해 지	해 제
공통점	단독행위, 형성권, 당사자의 약정,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적용범위	계속적 계약관계	일시적 계약관계
효력발생	장래를 향해 효력소멸(비소급효)	처음부터 무효(소급효)

좋은 사람을 찾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좋은 조건을 찾지 말고, 내가 좋은 조건이 되는 사람이 되어주자
좋은 사랑을 찾기 전에, 좋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주자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지 말고, 좋은 하루를 만들자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나 스스로 행복하자

털어봐~ 아프지 않은 사람있나
쿡짜봐~ 슬프지 않은 사람있나
찾아봐~ 힘들지 않은 사람있나
건드려 봐~ 눈물나지않는 사람있나
물어봐~ 사연없는 사람있나
살펴봐~ 고민없는 사람있나
가까이 다가가 봐~ 삶의 무게 없는 사람있나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사랑은 불타도 연기가 없더라

장미가 좋아 꺾었더니 가시가 있고
친구가 좋아 사귀었더니 이별이 있고
세상이 좋아 태어났더니 죽음이 있더라

살만하니 떠나는게 인생이더라

자기가 어느 위치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먹기에 달렸나 봅니다.
나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위로받고 행복해지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